

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[별표 4]

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(제8조제3항 관련)

1. 각 과목별 배점비율

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,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,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,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.

2.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

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.

3.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

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한다.